



FTA FOCUS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

김중근 | 한국관세사회 연구원 실장(경제학박사)

REPORT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



김종근
한국관세사회 연구원 실장
(경제학박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세계무역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중 갈등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화 둔화(Slowbalization),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곡물 등에 대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그린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수출은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역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역성장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수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FTA 활용을 위한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조망한다. 먼저 중소수출기업의 현황과 FTA 수출활용률을 살펴본 후,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을 중소기업지원 방안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중소기업의 현황과 FTA 수출활용률

통계청·관세청의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95,015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91,865개 96.7%, 수출액은 1,133억불 1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가 1~9인의 영세중소기업이 61,421개 64.6%, 수출액은 316억불 4.6%로 나타나, 상당수 중소기업은 FTA 전문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 기업 규모별 수출

(단위: 개, 억불,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기업 수(비중)	91,865(96.7)	2,218(2.3)	932(1.0)	95,015(100.0)
수출액(비중)	1,133(16.6)	1,240(18.2)	4,447(65.2)	6,820(100.0)

자료: 통계청·관세청,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23. 5. p.2

[표 2] 종사자 규모별 수출

(단위: 개, 억불, %)

구분	1~9인	10인~49인	50~249인	250인 이상	계
기업 수(비중)	61,421(64.6)	23,668(24.9)	8,016(8.5)	1,910(2.0)	95,015(100.0)
수출액(비중)	316(4.6)	354(5.2)	850(12.5)	5,301(77.7)	6,821(100.0)

자료: 통계청·관세청,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23. 5. p.4

한편, FTA 수출활용률은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출액을 특혜대상품목 수출액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으로, 최근 5년간 FTA 수출활용률은 2017년 70.0%에서 2021년 75.7%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 격차는 21.5% ~ 24.7%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FTA 전담인력 부족, 원산지 증명서 및 필수 서류의 작성 및 구비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격차 문제는 국회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표 3] 최근 5년간 FTA 수출활용률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대기업	81.3	83.1	85.0	83.6	85.1	82.8
중소·중견기업	58.0	60.1	60.3	62.1	61.5	60.5
격차	23.3	23.0	24.7	21.5	23.6	22.3
전체	70.0	73.5	74.9	74.8	75.7	74.1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2. 9.30.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수출기업은 FTA 활용을 위해서 대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보관하는 등 원산지증명 및 검증대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에 영세수출기업은 수출액이 적어 수입국에서 받을 수 있는 특혜관세 혜택 또한 적을 수밖에 없어, FTA 활용에 대한 유인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FTA 활용률이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지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FTA 활용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으로 세분한 활용률 산출을 제안해본다.

수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FTA 활용이 가능한 영세수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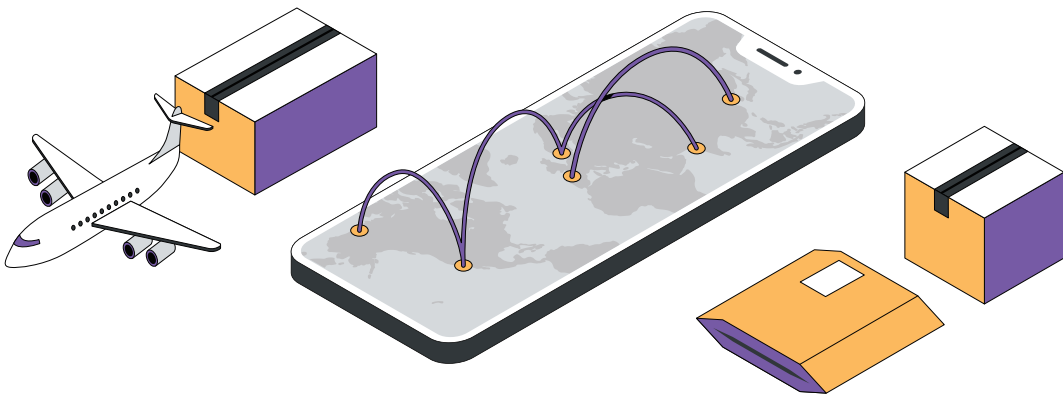
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는 21개 협정, 59개국과 발효되어 전세계 GDP 대비 83%에 달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은 세계 GDP 및 무역 규모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은 '1 국가 다협정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원산지증명의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을 도입하여 FTA 활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RCEP 등 신규 FTA의 확대에 '1 국가 다협정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FTA 특혜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자금, 정보 등이 부족하여 FTA 활용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특화된 FTA 활용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세관 이외에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컨설팅할 수 있는 FTA 전문가는 관세사이다. 또한,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제공하는 FTA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 역시 관세사이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수출입통관 등을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세사는 독립된 국가전문자격사법인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과목 이외에 무역실무(대외 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무역 관련 과목을 2차 주관식 시험에서 평가받음으로써 무역전문가로서 지식도 검증받고 있다.

특히, 2007년 FTA 확대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학이 시험과목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사는 신속 통관에서 위험 물품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세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경제 국경의 최일선에서 수출입화물의 안전 지킴이

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세청과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세관과 수출입기업의 가교가 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세관 인력을 대신하여 통관 관련 업무를 90% 이상 수행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세행정 및 관세사 수의 변화를 보면, 2000년 대비 2021년 수출은 274.0%, 수입은 283.2% 증가한데 비해, 세관 인력은 약 30% 내외의 증가에 불과하였다.

동 기간 관세사는 739명에서 2,186명으로 195.8% 증가하여 부족한 세관 인력을 대신하고 있다.

[표 4] 관세행정 및 관세사 수 변화

구분		단위	2000년	2021년	변화율(%)
수출·입 (통관기준)	수출	역불	1,723	6,444	274.0
	수입		1,605	6,151	283.2
세관 인력	관세청	명	285	368	29.1
	세관		3,590	4,775	33.0
관세사	관세사회 등록	명	739	2,186	195.8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2022) 및 한국관세사회, 2021년 12월말 기준

또한, 신고자별 수출입 실적(2021)에서 관세사는 수출의 경우 건수는 79.9%, 금액은 85.1%를 신고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건수는 99.7%, 금액은 91.2%를 신고하고 있어 관세행정에 일조하고 있다.



[표 5] 신고자별 수출입실적(2021)

(단위: 천건, 억불, %)

구분	수출			수입		
	관세사	화주	합계	관세사	화주	합계
건수	12,070(79.9)	3,036(20.1)	15,106(100.0)	38,927(99.7)	98(0.3)	39,025(100.0)
금액	5,486(85.1)	958(14.9)	6,444(100.0)	5,612(91.2)	540(8.8)	6,125(100.0)

자료: 관세청, 그림으로 보는 통계(2021), 2022.

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관세무역전문가로서 FTA 활용지원

RCEP 발효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한-아세안 FTA(2007), 한-베트남 FTA(2015), RCEP(2022) 등 3개 FTA 가운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이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 PASS는 사용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1 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 등을 제공하고 있어 중소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세사는 FTA PASS를 활용하여 특정 품목의

이용 가능한 협정 세율을 비교하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파악한 후, 거래 협정 국가의 수출입허가를 위한 식품안전기준, 검역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컨설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는 가장 효율적인 FTA 협정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사는 FTA 등 컨설팅 업무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통관업무 중심의 컨설팅에서 무역업무 전반에 걸친 컨설팅으로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세사가 영세수출기업의 무역업무를 아웃소싱 받아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회는 관세사가 관세무역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역업무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나. 원산지증명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RCEP 발효를 계기로 원산지증명은 이제 기관 발급과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 발효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는 기관발급이나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발효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기관발급이나 인증수출자(발효 후 2년 이내) 및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발효 후 10년 이내)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관세 당국이 인증수출자를 인증하고,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 자율증명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관세 당국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권한이나 기관발급 할 때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FTA 활용과 대외신인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은 중요하다. 하지만 FTA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관세사 도움 없이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판정을 책임지고 서류보관과 검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은 쉽지 않다.

인증수출자 인증 기업은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사는 중소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받을 때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인증유효기간 연장, 수출검증 대비 등 인증수출자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인 전담인력 부족 및 원산지증명 등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해법은 관세사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4 맺음말

다가오는 2024년은 최초 한-칠레 FTA(2004)를 발효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FTA 수출활용률을 고려할 때 대기업 및 일정 규모를 갖춘 중견·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영세수출기업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FTA 활용이 가능한 중소수출기업 발굴과 맞춤형 핀셋 지원을 위해 세분한 FTA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인증수출자 인증 및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가 제공된다면, 관세사가 수출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지원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FTA 활용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 관련 컨설팅 수행 중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컨설팅 사후관리도 제공하고 있어 인증수출자 인증 등 FTA 컨설팅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하다.

컨설팅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무역전문가로서 관세사가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